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9 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이주영・김예지・정성호

인요한 • 전용기 • 정춘생

천하람 • 이준석 • 윤상현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.

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·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

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(안 제56조등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된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사회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"을 "사실상 노무를 제공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"를 "10년(자원봉사활동제한 기간은 5년)을 초과하지 못한다"로한다.

제58조제1항 중 "해임"을 "해임 또는 노무제공의 중단"으로 한다. 제67조제2항제2호 중 "해임요구"를 "해임 또는 노무제공의 중단 요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1조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제21조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과) ① ~ ④ (생 략) 과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<신 설>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된 경우 제56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시설 ·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사회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~ ⑨ (생 략) ⑥ ~ ⑩ (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) ① -----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 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 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정 기간(이하 "취업제한 기간"이라

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· 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"이 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 제한 명령"이라 한다)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 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1. ~ 25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~ ⑨ (생 략)

제58조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 저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

<u>사실상 노무를 제공(「자</u>
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제1
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
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
1. ~ 25. (현행과 같음)
②
10년(자원봉사활동제한 기
간은 5년)을 초과하지 못한다.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세58조(취업자의 해임요구 등) ①

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 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·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제67조(과태료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58조에 따른 <u>해임요구</u>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
 - ③ ~ ⑤ (생 략)

해임 또는 노무제공의
중단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해임 또는
노무제공의 중단 요구
③ ~ ⑤ (혀해과 간은)